

심의결과 원안대로 가결

의안번호	회의차수	회의일자	제 의 자
13	4	1994. 2. 17.	중재 김명호

의안 「금융기관어신운용규정」 개정

의결사항 「금융기관어신운용규정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한다.

제외관계
법규조항 「한국은행법」 제7조

제외취지 당행 대중제도의 개편에 맞추어 관련규정 내용을 정비하고자 전기와 같이
의결할 것을 제외함

1150



<참고사항 >

제의관계 법규조항 발제

한국은행법 제7조

(생 략)

- ㉠ 금융통화위원회의 이 법에 규정된 범위내에서 통화신용의 운영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과 금융통화위원회의 명백히 부여된 기타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한국은행의 업무, 운영, 관리에 관한 지시감독을 한다.
- ㉡ 금융통화위원회의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규정, 지시를 발할 수 있다.

(생 략)

1151

<붙임>

「금융기관여신운용규정」 개정(안)

현행	개정(안)	비고
제1조 (생략)	제1조 (현행과 같음)	
제2조 (여신운용 및 투자지침) (생략) 1. ~ 7 (생략) 8.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확대. 특히 시중은행은 원화금융 자금대출 증가액의 45%이상, 지방은행은 80%이상,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35%이상(한국은행으로부터 삼업어음 제한인을 받지 않기로 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%이상)을 각각 중소기업자에게 지원 9 (생략)	제2조 (여신운용 및 투자지침) (현행과 같음) 1 ~ 7 (현행과 같음) 8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확대 특히 시중은행은 원화금융 자금대출 증가액의 45%이상, 지방은행은 80%이상,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35%이상(「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대출규정」 제2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대출을 받지 않기로 한 외국은행 국내지점은 25%이상)을 각각 중소기업자에게 지원 9 (현행과 같음)	◦ 총액대출제 도입에 따른 조문 정비
제3조 (여신의 금지) 금융기관이 <별표>의 "여신금지부문"에 대한 여신을 취급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불건전한 여신으로 본다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여신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. 1.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규정에 의하여 취급하는 여신 2. ~ 4 (생략)	제3조 (여신의 금지) (현행과 같음) 1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규정과 한국은행 총재가 따로 정하는 총액한도대출 관련규정에 의하여 취급하는 여신 2. ~ 4. (현행과 같음)	◦ 총액대출제 도입에 따른 조문 정비
제3조의 2~제12조 (신설) 1182	제3조의 2~제12조 (신설) 부칙 이 규정은 1994. 3. 15.부터 시행한다.	